

청 주 지 방 법 원

제 2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50947 보증채무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김혜원
피고, 피항소인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5가소5319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94,064원과 그 중 6,294,129원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0. 2. 19. 'B'를 운영하는 C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대출 대상자로서 2,000만 원을 금융기관인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C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여신기간을 2020. 2. 20.부터 2025. 2. 14.까지, 여신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 거치한 후 2022. 5. 20.부터 매 3개월 마다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20. 2. 19.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관 및 전자(Cyber) 보증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100%인 2,000만 원에 대하여 전자보증을 하였다.

라. 한편 C은 2018. 7. 10.경 원고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20. 2. 21.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 원고에 대한 위 기 존 채무 12,627,449원을 상환하였다.

마. C은 2022. 5.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이자와 분할상환금을 지급해 오다가 2023. 5.경부터 지급을 지체하게 되었고, 원고는 2023. 10. 17.경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면서 보증채무 14,390,514원(= 원금 14,162,000원 + 이자 228,514원)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23. 12. 18.경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 14,390,514원 중 7,493,727원

(= 원금 7,374,551원 + 이자 117,176)에 대하여는 승인하지만 나머지 6,896,787원(= 원금 6,787,449원 + 이자 109,338)에 대하여는 면책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23. 12. 21. 피고로부터 위 보증채무 이행으로 7,549,015원(이자 포함)을 지급받았고, 이후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 일부를 추가로 회수하였는데, 2024. 11. 24.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중 미수금은 7,094,064원(= 원금 6,294,129원 + 이자 799,935원)에 이른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을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보증채무로 7,094,064원 및 그 중 6,294,12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면책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신용보증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보증부대출금으로 기존 채권의 상환에 충당될 경우 면책되는바, 원고가 구하는 위 보증채무는 원고의 C에 대한 기존 채권의 상환에 충당된 부분이므로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2) 판단

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체결한 피고의 신용보증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피고는 '재단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가 채권자 기존 채권의 상환에 충당된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면책규정과 같은 신용보증약관 규정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취지에서 보증부대출금이 실제로 그 신용보증의 목적에 따라 활용되는 것을 보장하고,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므로, 면책규정의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권자의 기존채권의 상황에 충 당된 때'에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부 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는 물론, 보증부대출금이 채무자에게 교부되거나 송금되어 채무 자가 그 대출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보증부대출금이 변제 에 충당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0647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피고의 보증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금을 받고 서 다음 날인 2020. 2. 21.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인 12,627,449원을 원고에게 기존 대출금 채무의 상환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면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일부가 채권자 기존채 권의 상황에 충당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12,627,449원 부분은 면책되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면책규정의 제한해석 주장에 관하여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면책규정이 재단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가 '채권자 기존 채권의 상황에 충당된 때'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면책의 요 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채권자가 재단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가 채권자 기존 채권의 상황에 충당된다는 것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을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 채무자 C이 모바일뱅킹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책규정을 둔 공익적 취지,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의미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① C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다음 날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 원고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사정, ② 원고 스스로가 피고 보증으로 채권회수가 확실한 이 사건 대출금의 실행으로 C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는 이익을 얻은 사정, ③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하면서도 기존 채권의 상환에 충당하여서는 안 된다고 별도로 안내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과 기존 대출금 상환 사이의 밀접한 시간적 간격, 기존 대출금 상환의 수혜자,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업무방식에다가 원고가 C의 대출내역, 계좌내역과 자금의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면책규정까지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채무자 C이 모바일뱅킹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출금 업무와 기존 대출금 상환 업무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대출금 일부가 C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권의 상환에 충당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2,000만 원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7,372,551원 부분에 한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보증채무 중 원금 7,374,551원¹⁾ 및 이에 대한 이자 부분을 승인하여 지급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부분이자 면책된 범위에 속하는 보증채무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범

판사 이성기

판사 조의연

1) 계산상 7,372,551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피고는 추가로 2,000원을 더하여 지급하였다.